

2021년도 (재)달성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계획안

의안 번호	188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0. 11. 12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- 2021년도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(재)달성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: 금1,182백만 원
 - 내실있는 재단 운영을 위한 경비
 - 인력운영비, 사무관리비, 공공운영비, 연구개발비 등
- (재)달성문화재단 사업비 출연 : 금2,095백만 원
 - ‘건전한 문화예술 선도’의 비전선포를 비롯한 각 사업의 질적, 양적 다양화를 통하여 달성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.
 - 특히 달성100대 피아노, 달성 대구현대미술제의 경우 달성군의 문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여 지역의 홍보 및 가치 상승에 기여

3. 출연 심의요구서 : 따로 붙임

4. 사업부서 검토의견 : 따로 붙임

5. 출연기관 현황 : 따로 붙임

출연 심의요구서

출연 대상	☐ 기관명 : (재)달성문화재단 ☐ 대 표 : 김문오 ☐ 일반현황 :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길 188							
	☐ 출연 예정금액 : 3,277백만원(군비 3,277백만원) ☐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 : 백만원)							
출연 사업비	구 분	사업 기간	2020 예산액 <최종>	2021 요구액	재 원 별			
					계	국비	시비	군비
	합 계		4,158	3,277	3,277			3,277
	인력운영비	1~12월	575	733	733			733
	기본경비	1~12월	188	449	449			449
	달성 100대 피아노	9월	650	0	0			0
	달성 대구현대 미술제	9월	400	700	700			700
	달성스토리텔링	1~12월	250	250	250			250
	달성군립합창단 운영	1~12월	95	95	95			95
	달성음악회	1~12월	240	0	0			0
	예술자치구역	1~12월	150	150	150			150
	문화기획지원	1~12월	120	120	120			120
	성악중창페스티벌	12월	90	0	0			0
	달천예술창작 공간 운영	1~12월	65	150	150			150
	2020 도동페스타	1~12월	135	0	0			0
	문화도시지정 공모사업	1~12월	200	300	300			300
	버스킹 in달성	1~12월	0	50	50			50
	새봄맞이음악회	1~3월	0	45	45			45
	계간지발간	1~12월	0	60	60			60
	10주년기념백서 제작아카이브구축	1~12월	0	95	95			95
	학술세미나· 비전선포식	1~12월	0	40	40			40
	달성고유물 수집 사업	1~12월	0	40	40			40
	기본재산 적립금	1~12월	1,000	0	0			0

출연 발성	○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, 문화기반시설의 전문적 운영을 위해 달성문화재단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 지원 ○ 타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예술 사업추진으로 달성의 문화위상을 제고
근거 법령	○ 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○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, 보호, 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사업 부서 의견 (총평)	○ 지역의 주요 문화자원 발굴을 통한 자산가치 증대 ○ 문화예술 중심도시 브랜드 가치 창출 ○ 각종 신규사업 발굴 및 계속사업의 창조적 발전에 기여

사업부서 검토의견서

1.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○ 경영평가(한국산업관계연구원, '20. 3. 25. ~ 6. 22.)

- 2020년(2019년 실적) 경영실적 평가결과 : A등급(91.79점)

평가분야	평가배점(%)	평가점수	비고
지속가능경영	30	27.89	• 리더십 지표 • 전략 지표 • 운영 적절성 지표 • 인사·조직 지표 • 재무관리 지표 • 예산관리 지표
경영성과	40	34.75	• 사업지표 • 사업성과 적절성 지표 • 고객만족 지표
사회적가치	30	29.15	• 일자리 확대 지표 • 사회적 책임 지표
총 점	100	91.79	

2.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

○ 2021년 출연금 3,277백만원 교부로 재단 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

- 인력운영비, 기본경비 등 1,182백만원

- 2021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등 자체사업비 2,095백만원

3.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9년 결산액	2020년 예산액 <최종> (A)	2021년 예산(안)			
			기관 요구액 (B)	부서 검토액 (C)	증감 (C△B)	전년대비 증감액 (C△A)
총 계	2,804	4,158	3,279	3,277	△2	△881
기관운영비	818	763	1,184	1,182	△2	419
인력운영비	521	575	734	733	△1	158
기본경비	297	188	450	449	△1	261
자체사업비	1,986	2,395	2,095	2,095	0	△300
달성 100대 피아노	529	650	0	0	0	△650
달성 대구현대미술제	361	400	700	700	0	300
달성스토리텔링	189	250	250	250	0	0
달성군립합창단 운영	88	95	95	95	0	0
달성음악회	236	240	0	0	0	△240
예술자치구역	116	150	150	150	0	0
문화기획지원	246	120	120	120	0	0
성악중창페스티벌	86	90	0	0	0	△90
달천예술창작공간운영	0	65	150	150	0	85
2020 도동페스타	0	135	0	0	0	△135
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	0	200	300	300	0	100
버스킹 in 달성	0	0	50	50	0	50
새봄맞이음악회	0	0	45	45	0	45
계간지발간	0	0	60	60	0	60
10주년기념백서제작 아카이브구축	0	0	95	95	0	95
학술세미나·비전 선포식	0	0	40	40	0	40
달성고유물 수집사업	0	0	40	40	0	40
중장기발전계획연구사업	49	0	0	0	0	0
도동서원세계문화유산 등재기념음악회	86	0	0	0	0	0
기본재산적립금	0	1,000	0	0	0	△1,000

출연기관 현황

기 관 명	(재)달성문화재단				전화번호	053.659.4271	
					홈페이지	www.dsart.or.kr	
설립근거	민법제32조,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,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, 달성군립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						
주요연혁	2011.05.17. 등기						
임원 (20.11.1 현재)	직책	성명	주요경력			임기	
	이사장	김문오	달성군수			재임기간	
	대표이사	서정길	現 달성복지재단 이사장			2020.8.20.~2022.08.19	
	비상임이사	김철식	달성군청 참꽃갤러리 관장			2020.8.23.~2022.8.22	
	비상임이사	도원길	농업경영인 달성군 연합회 군감사			2020.8.23.~2022.8.22	
	비상임이사	이치우	한국예총대구연합회 부회장			2020.8.23.~2022.8.22	
	비상임이사	김정화	계명문화대학교 부교수(생활음악)			2020.8.23.~2022.8.22	
	비상임이사	전유진	달성군학부모협회 회장			2020.8.23.~2022.8.22	
	비상임이사	표준식	달성군 정책관광국장			재임기간	
	감사	도창곤	한경회계법인 전무이사			2020.8.23.~2022.8.22	
	감사	김진천	달성군 문화체육과장			재임기간	
주요기능	○ 문화예술의 창작,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○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○ 도서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○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기획 및 운영						
최근3년간 예산현황	연 도	2018년	2019년	2020년	재무현황 2019.12.31 기준	자산	6,708백만원
	예산액	4,213	4,866	6,692		부채	3백만원
	지자체 지원액	3,190	3,393	5,437		자본	6,705백만원

1.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
2.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(출연금, 민간위탁금 등)

□ 「지방재정법」

지방재정법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문화예술진흥법 제3조(시책과 권장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,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권장, 보호, 육성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.

□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(기본재산 및 재정지원)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(이하 “군”이라 한다.)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

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(운영재원 등)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,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